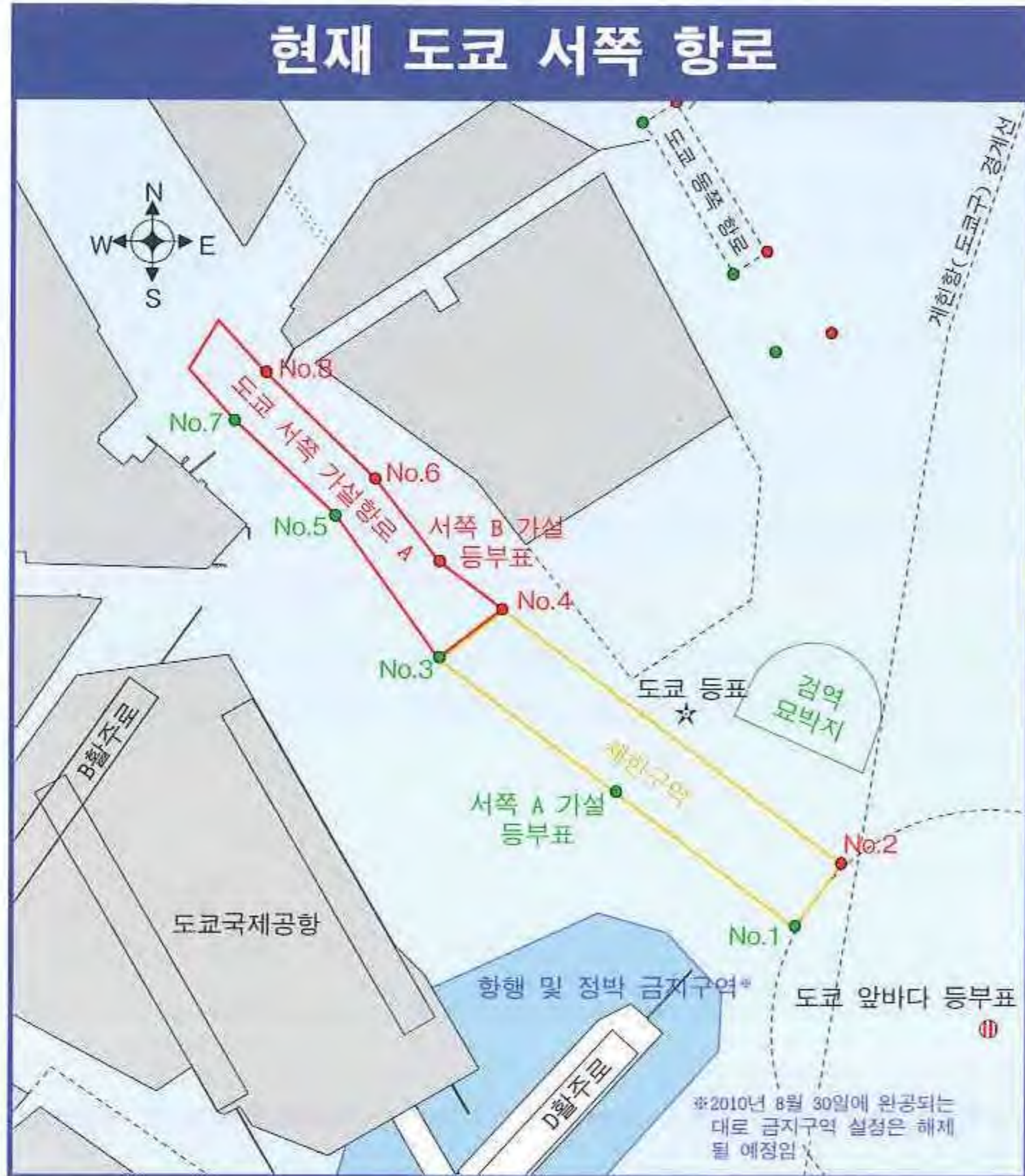


새로운 항내교통관제 도입에 관한 알림

(도쿄 서쪽 항로, 도쿄 동쪽 항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활용한 효율적인 항내교통관제를 목적으로 **2010년 10월 1일부터** 도쿄 서쪽 항로, 도쿄 동쪽 항로에서 실시되고 있는 항내교통관제의 기준 및 운용방법이 변경됩니다.

I. 제한구역이 폐지되고 도쿄 서쪽 항로가 변경됩니다(다음 그림 참조). 도쿄 동쪽 항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II. 관제선^{*1} 및 관제대상선^{*2}의 기준이 총톤수에서 길이(전장)로 변경됩니다. (다음 표 참조)

*1 관제선: 관제신호가 입항신호(I) 혹은 출항신호(O) 일 때만 항로를 항행할 수 있는 일정 이상 길이의 선박

*2 관제대상선: 관제선이 항로를 입출항할 때 통행이 제한(항장이 인정한 선박은 제외) 되는 일정 이상 길이의 선박

항로	선박	이전의 기준	새로운 기준
도쿄 서쪽항로	관제선	25,000GT 이상 (유송선 1,000GT 이상)	전장 300m 이상 (유송선 5,000GT 이상)
	관제대상선	500GT 이상	전장 100m 이상
도쿄 동쪽항로	관제선	5,000GT 이상 (유송선 1,000GT 이상)	전장 150m 이상 (유송선 1,000GT 이상)
	관제대상선	500GT 이상	전장 50m 이상 단, 500GT 미만은 제외

(다음 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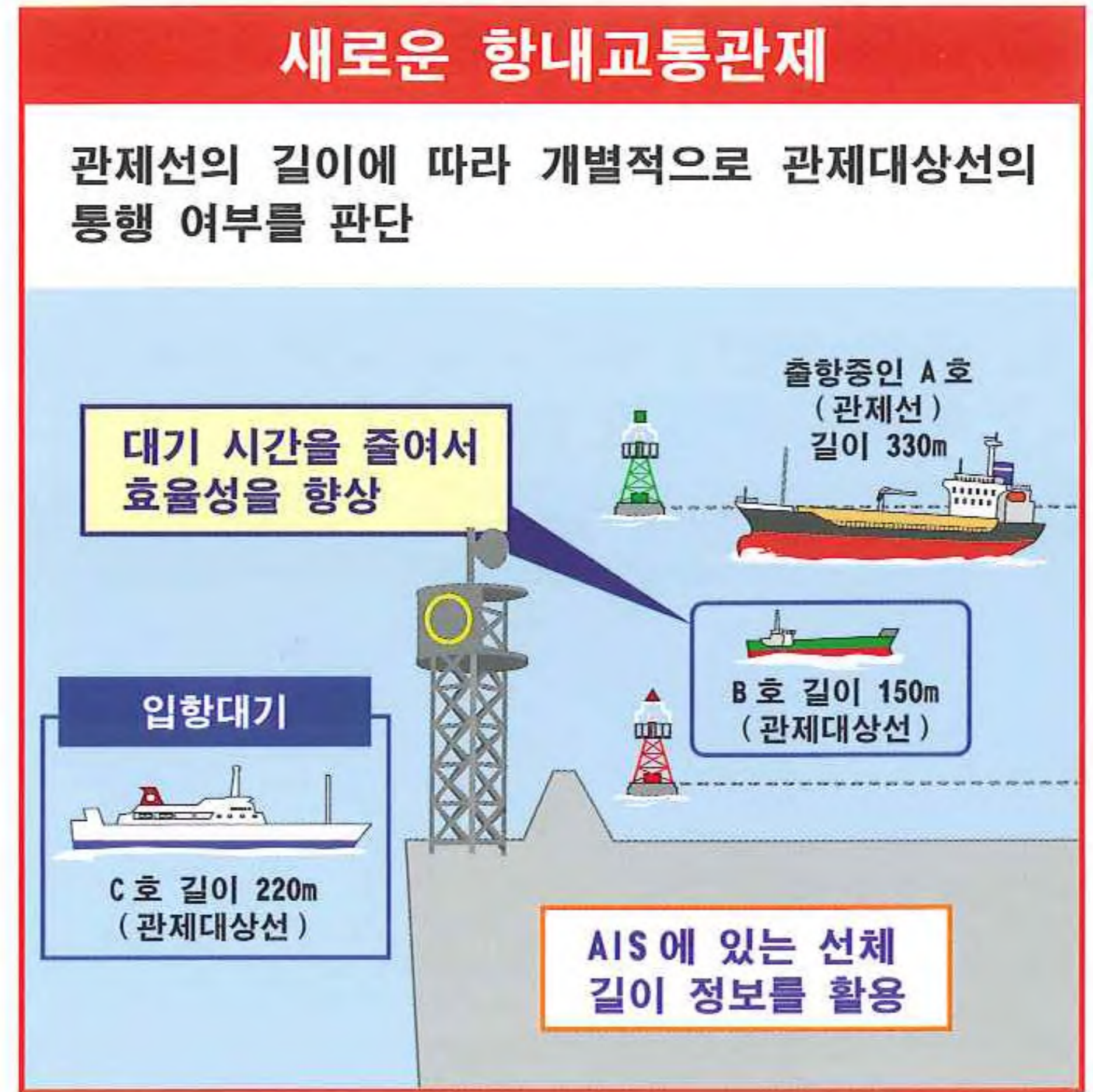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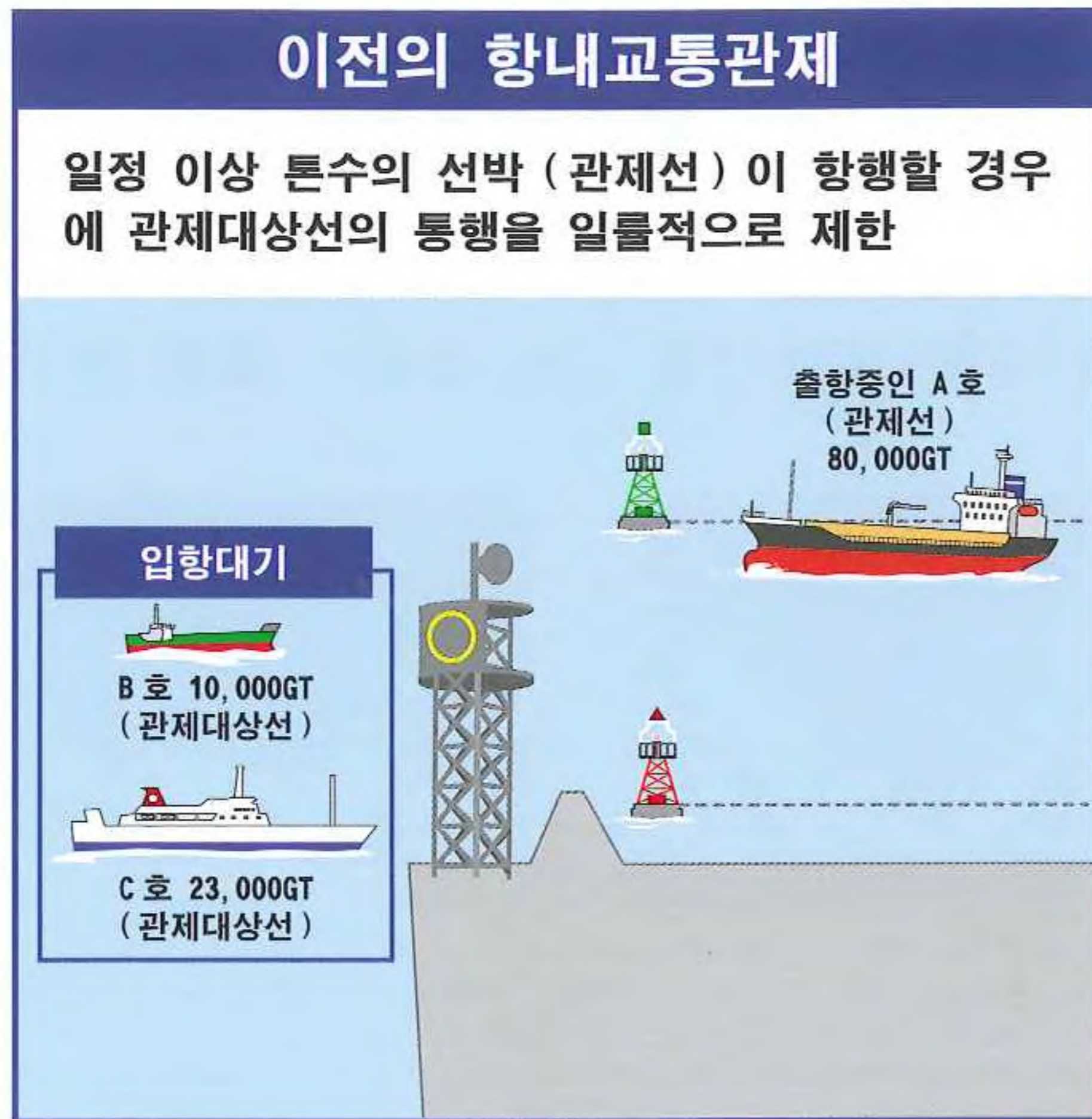
문의처

동경만 해상교통센터

전화: 045-225-9151

Ⅲ. 항로의 준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도쿄 서쪽 항로에서는 선박의 길이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서 항장이 인정한 관제대상선이면 출항신호(0) 일 때에도 입항, 혹은 입항신호(1) 일 때에도 출항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그림 참조)

※도쿄 동쪽 항로에서는 변경없이 관제대상선의 통행이 일률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전의 항내교통관제는 일정 이상 톤수의 관제선이 항로를 항행할 때 관제대상선의 통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항내교통관제에서는 관제선의 길이 (전장) 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관제대상선을 항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관제신호에 따라 대기해야 했던 관제대상선이 새로운 항내교통관제에서는 일정 조건에 따라 항로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관제신호에 의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Ⅳ. 새로운 항내교통관제의 통행 접수 절차

① 관제선의 입출항 예정은 동경만 해상교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 <http://www6.kaiho.mlit.go.jp/tokyowan/>

② 관제선의 출입항 예정시간대에 항로 통행 (관제) 을 원하는 관제대상선은 출입항 예정시간 1 시간 전부터 항행시작전까지의 시간 안에 직접 또는 대리점 등을 통해 다음의 수단으로 도쿄해상보안부 항내교통관제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 045-225-9151 FAX : 045-225-9154 ▶전자신청 : Sea-NACCS

◆VHF : CH16, CH12 호출명칭 "YOKOHAMA-HARBOR COAST GUARD RADIO" ※

※게힌항의 도쿄구, 요코하마구, 가와사키구에서는 공통호출명칭 "YOKOHAMA-HARBOR COAST GUARD RADIO"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AIS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신청을 받은 항장은 관제선과 관제대상선의 항로내에서의 통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는 AIS 메시지로 알립니다. 관제대상선은 AIS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항로를 항행해 주십시오.

Ⅴ. 필요에 따라 VHF 등으로 연락할 경우가 있으므로 AIS 정보 확인뿐만 아니라 VHF 의 청취도 이행해 주십시오.

Ⅵ. 관제선과 관제대상선의 도쿄 서쪽항로내에서의 통행은 다음 조건하에서 실시됩니다.

- ㄱ. 동경만 해상교통센터 이 AIS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ㄴ. 관제대상선의 전장 l [m] 이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함. $l \leq 1200 - 3xL$ (L: 관제선의 전장 [m])
 - ㄷ.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3 시까지여야 함.
 - ㄹ. 기상이 풍속 15m/s 미만이면 시정 1 해리 이상이어야 함.
 - ㅁ. 관제선이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어야 함.
 - ㅂ. 관제선과 관제대상선은 1 척대 1 척으로 통과해야 함.
- ※항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상기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항로 통행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